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 <별지 서식>

-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등록**하여야 합니다.
- ※ 목차는 가맹본부에 맞게 더 자세하게 나누십시오.
- ※ 이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특히 대괄호[ ]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5856]      otarufc@naver.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2.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2]

# 도쿠도쿠

##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디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길100번길 54 , 디오**

**가맹본부대표전화 : 051-710-8675**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디오 | 도쿠도쿠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길 100번길 54 |         |              |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2017.04.10             | 김동오     | 051-710-8675 | 0504-390-8975 |
|    | 법인등록번호 | 해당없음                   | 사업자등록번호 | 531-44-00186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도쿠도쿠]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도쿠도쿠             |                                              |
| 상 호       | 도쿠도쿠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b>DOKU DOKU</b> |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4131800000<br>등록일자: 2018.11.02 |
| 그 밖의 영업표지 | DOKU DOKU / どくどく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sup>①</sup>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145,271 | 110,618 | 34,652  | 735,498   | 45,358  | 41,311  |
| 2022년 | 219,528 | 89,685  | 129,842 | 1,389,846 | 184,996 | 183,190 |
| 2023년 | 628,311 | 347,218 | 281,092 | 2,308,595 | 450,530 | 444,250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sup>③</sup>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김동오 | 대표   | 2017.04. ~ 현재 | 디오 대표 | 운영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4      | 0   | 7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도쿠도쿠<br>(상표권) | 가맹점<br>상호로 이용 | 2018.01.05. 출원<br>2018.08.07. 등록 | 출원 4020180002182<br>등록 4014131800000 | 김동오            | 2028.11.02.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도쿠도쿠] 가맹사업 현황

### 1. [도쿠도쿠]를 시작한 날: 2017년 5월 0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8년 08월 29일)

### 2. [도쿠도쿠] 연혁

|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디오 | 도쿠도쿠 | 김동오     | 2017 ~ 현재  | 부산 강서구 송정길100번길 54 |

### 3. [도쿠도쿠]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도쿠도쿠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기타외식 | 돼지고기 등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도쿠도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7         | 16   | 1    | 19         | 18   | 1    | 23         | 22   | 1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10         | 9    | 1    | 12         | 11   | 1    | 14         | 13   | 1    |
| 대구 | 4          | 4    | -    | 3          | 3    | -    | 4          | 4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1          | 1    | -    | 1          | 1    | -    | 1          | 1    | -    |
| 울산 | 2          | 2    | -    | 2          | 2    | -    | 3          | 3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1          | 1    | -    | 1          | 1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도쿠도쿠]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16 | 1     | -     | -     | 1     | 17 |
| 2022 | 17 | 4     | 2     | -     | 3     | 19 |
| 2023 | 19 | 5     | 2     | -     | 2     | 22 |

6. [도쿠도쿠]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도쿠도쿠]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2 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3 말<br>가맹점수 | 2023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 <sup>㉔</sup><br>3.3m <sup>2</sup> 당 | 상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하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
| 전체 | 22             | 424,127                | 14,043                                 | 1,190,315        | 35,473                    | 23,009           | 1,133                     |    |
| 서울 | -              | -                      | -                                      | -                | -                         | -                | -                         |    |
| 부산 | 13             | 521,079                | 17,770                                 | 1,190,315        | 35,473                    | 179,362          | 4,484                     |    |
| 대구 | 4              | 335,790                | 9,009                                  | 582,463          | 14,562                    | 232,900          | 4,658                     |    |
| 인천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대전 | 1              | 154,070                | 6,690                                  | 154,070          | 6,690                     | 154,070          | 6,690                     |    |
| 울산 | 3              | 254,034                | 8,950                                  | 505,643          | 34,054                    | 23,009           | 1,133                     |    |
| 세종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경남 | 1 | 297,419 | 11,969 | 297,419 | 11,969 | 297,419 | 11,969 |  |
| 제주 | - | -       | -      | -       |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도쿠도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도쿠도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22         | 1086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도쿠도쿠]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중소기업은행  | 가맹금예치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 1588-2588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디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 제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도쿠도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sup>①</sup>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sup>③</sup>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8,000 ] |                       |                          |                               |                                                                 |
| 가맹비             | 5,000     | 상담 후<br>가맹 계약<br>체결 시 | 오픈 전 가맹해지시<br>50% 지급     | 가맹점 모집을<br>위하여 소요되는<br>소멸성 비용 |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br>위약금을 공제<br>(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br>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
| 교육비             | 3,000     |                       | 가맹계약 만료시<br>해지시에도 100%지급 | 교육을 위해<br>소요되는<br>소멸성 비용      | 교육이 시작되면<br>반환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 3,000 ] |                       |                                           |                                                                                                     |
| 물류보증금 | 3,000     | 상당 후<br>가맹 계약<br>체결 시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br>공급한 물품 파손 및<br>물품대금 미지급 등 |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한 후<br>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br>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br>정산함을 원칙으로 함.<br>2.별도의 이자가 없음 |
| 담보목적물 | -         | -                     |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경남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
| 합계    | 11,000 |
| 가입비   | 5,000  |
| 교육비   | 3,000  |
| 개점행사비 | -      |
| 물류보증금 | 3,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 물품 구입 및 임차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비고 |
|----------------------------|-----------------------|--------|----------------|-------|----|
| 총계                         | -                     | 50,300 | 1,710          | 협 의   |    |
| 간판                         | 당사와<br>가맹점사업자가<br>협 의 | 3,000  | 1,600          | 협 의   |    |
| 필수설비<br>(가구,비품,주방<br>용품 등) |                       | 10,000 |                | 협 의   |    |
| 인테리어<br>(점포내장공사)           |                       | 34,000 |                | 협 의   |    |
| 초도공급상품                     | 당사                    | 3,300  | 110            | 물품주문시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증설, 냉난방기, 철거, 소방공사, 인허가, 음향, CCTV, 덕트, 외부추가공사 등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자체시공할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제공 및 공사의 감리를 진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 오백만 )원과 공사감리비 3.3㎡당 ( 삼십만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br>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만 20세 이상일 것 |

|     |           |             |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도쿠도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8. 광고 및 판촉 활동]쪽에 나와 있습니다.

| 구분        |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 가맹본부 | 매출의1.1%                   | 익월5일     | 반환안됨        | 후불             |    |
| 개점 이후 교육비 | 수시 교육 | 가맹본부 | 기본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 교육실시 7일전 | 교육실시 1일전 취소 |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    |
|           | 특별 교육 |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             |                |    |
|           | 재교육   |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          |             |                |    |

|                       |      |                   |                                |  |                       |                                                 |  |
|-----------------------|------|-------------------|--------------------------------|--|-----------------------|-------------------------------------------------|--|
|                       |      |                   |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개망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                       |                                                 |  |
| 판촉 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별로 부담           | 자세한 내용은 V-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판촉/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                                                 |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광고 시 분담액 결정       |                                |  |                       |                                                 |  |
| 간판류 임차료               |      | 해당없음              |                                |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
| 영업지역 보증금              |      | 해당없음              |                                |  |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및 보수비   | 가맹본부 | 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 교체 및 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급           |  |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회계처리 비용               |      | 해당없음              |                                |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당사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도쿠도쿠]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동오F&C]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즉시 가맹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이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 급십만원(₩100,000)정을 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도쿠도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표·용역 외에 다른 품목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도쿠도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꼬지 등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br>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div>도쿠도쿠의<br/>타가맹점사업자</div> <div>당사와 경쟁관계에<br/>있는 자</div> | 당사로부터<br>공급받는<br>모든 물품 | 거래상대방별로<br>왼쪽에 기재된<br>제품은 판매할 수<br>없음 | 1차 위반: 구두 경고<br>2차 위반: 서면 시정요구<br>3차 위반: 물류공급 중단 및<br>가맹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결정에 대해 지역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명란삼겹꼬치,<br>토마토베이컨꼬치,<br>닭껍질꼬치, 닭날개꼬치<br>등 | 상권에 따라 귀하와<br>협의하여 정하고<br>있습니다. | 공문발송<br>및<br>전화통지 | 당사와 귀하는 시장상황이나<br>소비자의 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br>권장 소비자 가격을 변경하고 할<br>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br>얻어야 한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목)

####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돼지고기 또는 닭을 이용한 꼬치 등과 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도쿠도쿠        |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가맹점으로부터 1k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 가맹계약 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하여 제공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도쿠도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도쿠도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2023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         |            |         | 계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몰 |           |
| 금액    | 9,330,786          | 0       | 0          | 0       | 9,330,786 |
| 비율    | 100%               | 0       | 0          | 0       | 10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 2023년 | 오프라인 전용상품 수 | 온라인 전용상품 수 | 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
| 상품 수  | 211         | 0          | 211           |
| 비율    | 100%        | 0          |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도쿠도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                  |



|                                                                            |              |
|----------------------------------------------------------------------------|--------------|
| 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1항 1호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1항 2호 |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1항 3호 |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1항 4호 |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1항 5호 |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하여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9조 1항 6호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0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p>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li> <li>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li> <li>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li> <li>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li> <li>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li> </ul> </li> <li>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li> <li>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li> <li>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li> </ol> | <p>제40조 2항<br/>각 호</p>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귀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br>-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완료 할 것.<br>-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 | 교육수료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도쿠도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꼬지 등과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도쿠도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오후 3시 ~ 익일 오전 6시 | 365일 연중 무휴 영업 | 설 및 추석은 재량 휴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점포를 점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하여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점포의 관리는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도쿠도쿠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br>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광고비의<br>50% | 광고비 50%<br>가맹점포수만큼<br>분담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br>광고참여 여부 결정 →<br>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br>명절, Day<br>이벤트 행사<br>(전국 행사) |
|             | 상품광고+<br>가맹점모<br>집광고 |             |                          |                                                   |                                         |

|                        |             |       |    |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개별 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br>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br>→ 행사 시행 → 종료 후<br>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br>절차를 거친 후<br>전체 가맹점<br>사업자의 70%<br>이상의 동의 시<br>전체 적용 |
| 할인카드 ·<br>멤버십<br>제휴서비스 | 해당없음        |       |    |                                                                      |                                                                |

-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 판촉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즉시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br>1. 영업개시이전 부담<br>금전지급 방법 참조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br>- 점포입지 선정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1일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1일     |                                             |
| 가맹금 예치         |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 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2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3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4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br>비용항목 <sup>②</sup> |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비고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 | ○ 간 판 교 체 비용<br>○ 인 테 리 어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 점포 환경 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    |



|                                                                                     |                                                                                                    |                                                     |                                                                                                                                                                                                                                                                                                                                              |                                                                                 |  |
|-------------------------------------------------------------------------------------|----------------------------------------------------------------------------------------------------|-----------------------------------------------------|----------------------------------------------------------------------------------------------------------------------------------------------------------------------------------------------------------------------------------------------------------------------------------------------------------------------------------------------|---------------------------------------------------------------------------------|--|
|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br>○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포환경개선 : 20%<br><br>○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br>○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br><분할지급 시 절차><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 개점행사비       | 해당없음  |      |      |      |    |
| 판촉장려금       | 해당없음  |      |      |      |    |
| 판촉지원        | 해당없음  |      |      |      |    |
|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 해당없음  |      |      |      |    |
| 반품지원        | 해당없음  |      |      |      |    |
| 마일리지        | 해당없음  |      |      |      |    |
| CRM         | 해당없음  |      |      |      |    |
| 테스터         | 해당없음  |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sup>②</sup>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가맹사업팀<br>(051-710-8675)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 포함된<br>통상의 경영지도<br>비용을 초과한<br>부분에 한함) | 문의:<br>가맹사업팀<br>(051-710-8675)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도쿠도쿠] 가맹사업을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도쿠도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가맹브랜드의 이해,<br>음식 가공, POS 사용<br>전반적인 운영 방법 | 실습 교육         | 가맹계약 체결 후<br>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정기 교육 | 가맹점 통지사항<br>및 의견수렴                        | 개별 또는<br>집단강의 | 연 1회<br>개별 협의       | 필수 교육 |
| 특별 교육 | 가맹점 사업자의<br>요청 내용                         | 개별교육          | 개별 협의               | 선택 교육 |
| 재교육   | 가맹점관리 및<br>운영                             | 개별교육          |                     | 필수 교육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도쿠도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br>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1주 내외 | 3,0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교육  | 협의    | 협의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교육  | 협의    | 협의                    | 협의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또는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부산 | 부평점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8-1 (부평동2가 1층) |
|    |    |     |                             |
|    |    |     |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5년 4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841,388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별첨)가맹점리스트 및 직영점 평균매출액 참고

별지

## 대민식품 발주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본사 발주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별첨) 표준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